

# 99년도 食品衛生政策 方向

이 준근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 I. 食品衛生政策의 基本方向

식품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매일 섭취해야만 하는 생명의 필수에너지이다.

최근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대기·토양·수질 등 환경오염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농약·항생제 사용의 증가로 식품의 원료인 농·임·수·축산물 및 먹는물 등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외식산업의 급성장 및 WTO체제 등 시장개방에 따른 다양한 식품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외의 식품위생환경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로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식품산업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조·가공업소의 약 85%정도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소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심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으며, 식품관련 종사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의식수준 등 식품안전에 관한 주변여건이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이제 식품도 국가간 무한경쟁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품질, 가격 등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대내외의 식품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식품의 자급도가 매우 낮아 해외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에서 식품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푸짐한 한상차림”을 선호하는 식문화로 인해 1년에 무려 약 8조원 상당에 이르는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자원낭비 국가가 되었고 더욱이 막대한 외화를 들여 식량 등 식품을 수입하는 마당에 이처럼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식품위생정책은 단순히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우선을 두겠으며, 식품안전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는 대폭 완화하는 대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공급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로 정책을 펴 나가겠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를 정착시켜 낭비없는 음식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위생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 II. 食品衛生關聯 制度改善

### 1. 식품위생제도 변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행정은 1945년 해방전 일제시대에는 단속을 위주로 경찰행정기구에서 담당하였으며, 당시의 법규도 『음식물, 기타 물품 취급에 관한 법률(일본 법률 제15호, 1900.2.24)』, 『위생상 유해 음식물 및 유해물품취급규칙(조선총독부 총령 제133호, 1911.11월)』 등 일제의 규정을 가지고 식품위생 행정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해방후 미군정을 거쳐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일반 보건행정 기구로 그업무가 이관된 후에도 계속 일제시대 또는 미군정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식품위생행정을 집행하여 오다가 5.16후 구법정리의 일환으로 비로소 통일된 단일 법률체제의 『食品衛生法』이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7호로 제정·공포되고, 『같은법施行令』이 1962년 6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되었고, 『같은법施行規則』이 1962년 10월 10일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공포됨으로서 명실상부한 식품위생행정으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후 식품위생법은 1차개정(법률 제1921호, 1967. 3. 30), 2차개정(법률 제2532호, 1973. 2. 16), 3차개정(법률 제2701호, 1974. 12. 21), 4차개정(법률 제2971호, 1976. 12. 31), 5차개정(법률 제3334호, 1980. 12. 31)을 거쳐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3823호로 전문 개정하였고, 7차개정(법률 제4071호, 1988. 12. 31), 8차개정(법률 제4432호, 1991. 12. 14), 9차개정(법률 제5099호, 1995. 12. 29)을 하였으며 현

재 총 13장 제80조문으로 법체계가 완비되어 식품위생행정 수행의 기본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 2. '98년도 식품위생제도 주요개선 현황

지난 한해동안 식품위생행정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족, 식품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 완화 및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기준을 폐지하였고,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객석 등 내부구조 변경허가의 신고제 전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지하수 사용시 매년 8개항목 간이검사를 하되 3년마다 45개 전항목검사로 개선하는 등의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족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5529호, '98. 2. 28)으로 대대적인 정부조직 축소개편이 이루어졌다. 중앙정부조직을 2원, 16부, 5처, 14청에서 17부, 2처, 16청으로 장관급 33개기관에서 24개기관으로 대폭적으로 감축한 반면, 오히려 식품관련 조직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발족시킴으로써 조직을 강화시켰다. 안전청이 발족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식품행정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에 관한 종합정책 개발, 식품위생법령의 제·개정 등 운영, 각종 규제의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고, 안전청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관리, 식품영업의 허가 및 사후관리, 식품관련 소비자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되며, 기관별 업무는 아래 [표1]와 같다.

[ 표 1 ]

기관별 소관 업무내용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p>○ 보건정책국 식품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정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개정</li> <li>- 식품위생 제도개선 총괄·조정</li> <li>- 식품위생법령에 관한 유권해석</li> <li>- 식품등 광고업무 총괄·조정</li> <li>-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li> <li>- 식품위생교육제도 운영</li> <li>- 식품관련 동업자조합(단체)의 인가 및 지도·감독</li> </ul>	<p>○ 본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조정</li> <li>- 식품관련 조사·연구</li> <li>- 식품등의 기준·규격 제·개정</li> <li>- 식품관련영업허가 및 사후관리 총괄·조정</li> <li>- 수입식품검사 및 총괄·조정</li> <li>-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제·개정</li> <li>- 품질관리제도 운영</li> <li>-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 운영</li> <li>- 식품등의 수거검사</li> <li>- 명예식품위생감시원·자율지도원 운영</li> <li>- 식품관련 각종 통계 관리</li> <li>- 독성연구소 운영 등</li> </ul>
<p>○ 보건자원관리국 식품의약품진흥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의 지원·육성</li> <li>- 식품관련 통상 및 대외협력</li> <li>- 식품 수출입관련 대외정보 관리</li> <li>- 식품관련 할당관세등 관세조정</li> <li>-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li> </ul>	<p>○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감시공무원 근무</li> <li>- 식품등 수거검사</li> <li>- 수입식품등의 검사</li> <li>-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li> <li>- 식품제조·유통업소 지도·단속</li> <li>-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임명·운영</li> </ul> <p>&lt;기관별 관할지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서울특별시, 강원도</li> <li>-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li> <li>-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인천광역시, 경기도</li> <li>-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li> <li>-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li> <li>-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li> </ul>

#### **나.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 완화**

식품위생종사자의 건강진단에 있어 그간 혈청검사 등 5개항목을 6월마다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통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 왔으나 우리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평소 개인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규정된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식품위생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을 1998년 1월 10일(보건복지부령 제58호) 개정하였다.

동규칙개정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종사자는 종전 소화기계전염병,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혈청검사 및 간염 등 총 5개항목에 대하여 6월마다 검사도록 하였으나 이를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및 B형 간염 등 총 4개항목에 대하여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였으며, B형간염의 경우에 예방접종을 받은 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이를 면제도록 하는 등 공중에게 직접 전파가 우려되는 전염병을 위주로 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병건강진단 대상자인 유흥접객원 및 휴게음식점중 다방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여자종업원에 대한 성병진단 항목 및 검사주기는 종전과 같이 실시도록 하고 있다.

#### **다. 식품영업 허가제한 개선**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제한업종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1996년 1월 8일 동 제한고시를 (고시 제 95-69호) 개정하여 과자류제조업 등 9개업종에 대한 허가제한을 해제하였다. 다만, 두부류제조업에 대하여는 동개정고시 부칙 제1조에 의거 1998년 1월 8일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여 시설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 누구나 자유로이 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반면, 단란주점영업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서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

가 없다고 인정하여 자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에서 신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집단민원 야기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신규허가를 일체 금지토록 하는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을 1998년 2월 9일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98-12호)하여 단란주점 영업의 허가제한을 강화하였다.

#### **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폐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식품위생법 제30조를 근거로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기준』 고시를 통하여 제한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89년 12월 13일자로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계기로 영업시간제한이 시작되었다.

그간 영업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자와 단속공무원(경찰,식품위생감시원)간 끊임없는 마찰이 이루어져 왔으며, 단속과 관련하여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영업시간제한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여 왔으나, 시·도간 영업시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경찰력 등 단속인력의 과도한 투입으로 청소년 보호 등 필요한 업무수행 차질초래 및 단속과 관련된 공무원비리의 원인제공 등의 문제로 1998년 6월 5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를 개정(대통령령 제15889호, '98.9.14)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영업시간제한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회수하면서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기준』 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98-52호, '98.9.14)를 통하여 영업시간제한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제과점, 다방 등)과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9월 15일부터 영업시간제한이 폐지 되었으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1999년 3월 1일부터 영업시간제한이 폐지될 계획이다.

#### 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공포

그간 추진되어온 수입식품검사업무 전산화사업의 완료, 감사원의 제도개선 요구, 영업자 및 소비자의 불편사항 등의 개선·보완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보건복지부령 제83호, '98.10.19)하였으며, 그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객석 등 내부구조 변경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만 하면 되도록 완화하였다.
- ▶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를 완화하였다.
  - ⇒ 매년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45개 전항목을 검사토록 하던것을 매년마다 8개항목 간이검사로 완화하고 3년마다 전항목을 검사토록 하였다.
- ▶ 영업자준수사항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을 위한 권장사항을 신설하였다.
  - ⇒ 『식품접객영업자는 낭비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통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함』
- ▶ 0-157 등 신종 식중독균의 검출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 ⇒ 식중독균 : 0-157,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크리스토리디움,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 ▶ 식품위생교육 기준을 완화 조정하였다.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4시간에서 3년마다 4시간으로 하되 신규 영업자는 6월이내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식품접객영업자가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관련 교육기관에서 신규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 2년이내에 재개업시 동일업종에 한하여 신규 교육을 인정하던 것을 유사업종(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과 유홍주점)으로 확대하여 상호 신규교육을 인정토록 하였다.

### III. '99년도 食品衛生制度 改善方向

금년은 그 어느해보다 식품위생제도 분야에 있어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미 지난해 2월 28일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으며 식품관련 조직은 종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본부(1급기관)가 독립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차관급)으로 승격·확대개편함으로서 식품·의약품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담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혁적으로 추진한 정부행정 규제개혁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식품분야 총 규제 109건중 72건(66.1%)을 폐지 또는 개선과제로 발굴·확정 하였고, 이중 42건을 완전 폐지하고 30건을 개선과제로 선정 하였으며, 이의 반영·시행을 위해 현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행정 전반에 걸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를 토대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식품관련 영업자도 안전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운반·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서 소비자인 국민이 신뢰하는 식품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